

#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

## [김지훈(국)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4. 03. .

발의자 : 김지훈(국), 한근수, 김지훈(민),  
이수련, 전해연, 김동훈,  
조성대, 정현미, 원주영

### 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·예술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순환버스 운영 및 노선 등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순환버스 이용대상 및 홍보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#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### 5. 관련 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
##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축제장”이란 정약용문화제, 광릉숲축제와 남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.
2. “순환버스”란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노선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.

제3조(순환버스의 운영)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,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행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조(운행노선 및 범위) 시장은 방문객의 편의와 지역축제장의 위치 등

을 고려하여 운행노선,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.  
제5조(이용대상자) 순환버스 이용자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
제6조(홍보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목적 외 운행 금지)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3조(순환버스의 운영) ① 시장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,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버스를 지역축제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순환버스는 시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, 임차버스를 활용할 시 예산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.
- (비용추계) 880천원 × 20대 × 2일 × 2개소 = 70,400천원

### 4. 작성자

-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

☑ 「관광진흥법」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